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안동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7. 5.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 ∫ 과에서는 관내 00동 000번지 외 0필지상에 △△△△△ △△ 신축공사를 '17.2.8. €€€€€€ 대표 ☆☆☆과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7.2.13.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표] △△△△△ △△ 신축공사 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일)	시 공 자	비 고
△△△△△ △△ 신축공사	00동 000 외 0필지	지하1/지상4층 연면적 3,952㎡	0,000백만원	'17. 2. 13 ~ '18. 2. 12 ('17. 2. 8)	€€€€€€(주) 대표 ☆☆☆	○ 00,000천원의 감액요인 발생에도 설계변경 미 이행 • 철근가공은 공장가공이 경제적이므로 고가의 현장가공 적용 • 페인트도색 횟수 필요이상 과다반영

철근가공은 공장가공이 경제적이므로도 철근 360톤에 대하여 고가의 현장가공을 적용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마감면이 깨끗한 신축공사의 경우 페인트도색은 2회를 적용하여도 양질의 마감이 가능함에도 3회를 적용 필요이상으로 과다반영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7.5.19.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하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시와 ™™™™™™™™™™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공사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의 책임하에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시와 ™™™™™™™™™™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과 에서는 관내 00면 00리 일원에 ☆☆☆☆·☆☆☆☆공원 조성사업을 ™™™™™™™™™™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위·수탁하여 '16.12.19. △△△△△△(주) 대표 √√√과 도금액 0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6.12.20.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표] 세계 유교·☆☆☆☆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일)	시 공 자	비 고
☆☆☆☆· ☆☆☆☆공원 조성사업	00면 00리 일원	지하1/지상2층 연면적 28,430㎡ (부지 29,583㎡)	00,000백만원	'16. 12. 20 ~ '20. 10. 25. ('16. 12. 19)	^^^ (주) √√√	○ 000,000천원의 감액요인 발생에도 설계변경 미 이행 사업관리소홀 • 페인트 도색 횟수 과다반영 • 가설울타리 557m 과다반영 • 미설치 가설건축물 정산 미이행 • 타일시공 고가의 압착불입 적용 등

마감면이 깨끗한 신축공사의 경우 페인트도색은 2회를 적용하여도 양질의 마감에 가능함에도 3회를 적용 필요이상으로 과다반영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있고,

공사현장이 산속에 위치하고 인근에 민가가 없는 등 현지여건상 가설울타리가 제한적으로 필요함에도 000m가 과다하게 설치 계획되어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식당용으로 가설건축물 000㎡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지여건상 불필요하여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정산조치하지 않았고 설치된 가설건축물 000㎡의 존치기간이 48개월로 실제 필요한 24개월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가설건축물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있다.

또한, 타일공사는 떠붙임이 경제적인데도 고가의 압착불입을 적용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자재(철골, 철근)의 운반거리가 과다하게 산정 운반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7.5.19. 감사일 현재까지 위·수탁 대행기관인 °°°°°°°°°°에 설계변경 요구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원 및 √√√√√√√√ 본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원조성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는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 등 공공기관과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 ○○○○○○○○과에서는 ℃℃℃℃℃℃℃℃에게 “☆☆☆☆☆☆☆☆공원 및 √√√√√√√√ 본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공공기관과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 12. 10. ‘(주)◇◇◇◇◇◇◇◇ ○○○’과 계약 하고

2019. 4. 17.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공원 및 ~~~~~~ 본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00	00	기반시설 1식	00,000	2014. 12.10.	2014.12.15. ~ 2019. 4.17.	(주)◇◇◇◇◇ ◇◇ ◎◎◎	진도 2%

1. 초기 우수처리시설 관련

본 공사의 초기 우수처리시설(2개소) 설치를 위한 비용은 관급내역으로 반영되어 있는데도 도급내역에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어, 도급내역에 이중으로 반영된 비용은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조경 유지관리 관련

본 공사에서 조경식재 후, 공사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교목전정(준공후 2회), 교목 병충해 방제(준공후 4회), 지주목 재결속(준공후 2회), 교목시비(준공후 2회), 잔디시비(준공후 2회), 잔디제초(준공후 2회), 잔디깎기(준공후 2회), 교목 관수(준공후 2회) 등이 설계 도급내역에 조경 유지관리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위 항목의 조경 유지관리 비용은 실제 공사준공 후에 필요한 공종으로 향후 준공 후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도급내역에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3. 수밀시험 및 CCTV검사 관련

환경부(하수67712-549호, 2003.05.22.)에서는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 공사시 CCTV검사 및 수밀시험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리

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 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하수관로의 품질관리를 위한 수밀시험(61개소) 및 CCTV검사(1,754m)를 분리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도급내역에 수밀시험을 포함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ㄲㄲ ~ ㄱㄱㄱ (리도000호)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우 우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우우과에서는 ‘ㄲㄲ ~ ㄱㄱㄱ 도로 확포장공사’를 2015. 12. 01. 우우우 우(주) ×××’과 계약하고 2015. 12. 07. 착공하여 2017. 12. 05.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다음 [표]와 같이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101호) 도로 확포장공사	00	00	도로 L=1,133.5m B=8.0m	0,000	2015. 12.1.	2015.12. 7. ~ 2017.12. 5.	♀♀♀♀(주) × × ×	진도 85%

1.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정산 미이행

본 공사의 순성토 19,080m³은 000 000 5공구 현장(운반거리 L=10.0km)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공사추진 중 반입지연으로 후속공정 차질이 예상되자, 이중 4,031m³을 ‘♂♂00호선 ♀♀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현장(운반거리 L=7.9 km)에서 무대로 반입하는 등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공사비 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등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2. 철근가공품 과다반영

본 공사의 우우1교 외 2개교 신설에 따른 철근소요량은 총 608.834톤으로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토록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중 공장가공이 불필요한 장대 철근 116.045톤에 대하여는 가공 품을 공제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과에서는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정비사업’을 2016. 4. 25. ◇◇◇◇(주) ↑↑↑과 계약하고 2016. 5. 2. 착공하여 2019. 4. 16.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 ♀♀♀♀♀♀ 정비사업	00	00	하천정비 1.87km	0,000	2016. 4.25.	2016. 5. 2. ~ 2019. 4.16.	◇◇◇◇(주) ♂ ♂ ♂	진도 30%

1. 콘크리트포장도로 보조기층 삭제

본 공사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절·성토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콘크리트포장 계획구간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미미하고, 성토용 토사는 하천골재 등이 많이 섞여있는 양질의 사질토로서 보조기층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 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을 제외하여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세륜세차시설 설치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시에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차량속도의 규제,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차량 덮개 설치 등으로 저감 시키는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공사에서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1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세륜세차시설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보전비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내역에 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별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과에서는 ‘○○○○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2013. 12. 2. 우우우우(주) ◇◇◇과 계약하고 2013. 12. 6. 착공하여 2017. 7. 13.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다음 [표]와 같이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 하천재해 예방사업	00	00	하천정비 L=7,507m	0,000	2013. 12.2.	2013.12. 6. ~ 2017. 7.13.	♀♀♀♀(주) ♂♂♂	진도 70%

1. 비탈면보호공(줄때) 시공계획 부적정

본 공사 비탈면보호공은 일부는 시드스프레이+거적덮기로, 일부는 줄때로 시공하는 등 2개의 다른 공종으로 분리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본공사의 현지여건을 살펴보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별도의 공종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시드스프레이+거적덮기로, 나머지는 비경제적이고 시공성도 좋지않은 줄때로 시공토록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공사의 비탈면보호공은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시드스프레이+거적덮기로 변경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함이 타당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세륜세차시설 설치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시에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차량속도의 규제,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차량 덮개 설치 등으로 저감 시키는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공사에서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4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는 세륜세차시설은 2개소를 설치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예정으로 있으나,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1개소의 세륜세차시설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정산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등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한 사실이 있다.

3. 부지임대료 제경비 제외

「설계실무 요령(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장사무실 등 부지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본 공사 ◇◇교 외 4개소 교량가설에 따른 제작장 부지임대료와 현장사무실 설치에 따른 부지임대료에 제경비를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과에서는 “○○·○○○○○○○○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5. 10. 23. ‘(주)우우우우 ±±±’과 계약 하고 2018. 10. 9.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하수관로 정비공사	○○	○○	하수관로 L=16.6km	00,000	2015. 10.23.	2015.10.26. ~ 2018.10. 9.	(주) ㉠㉠㉠ ㅊㅊㅊ	진도 60%

1.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구축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정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지정내역(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9호)」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의 측량용역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하수관로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은 도급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측량용역업 면허를 가진 중소기업자와 조달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함에도, 본 공사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하수관로 추진공 관련

○○처리분구의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국도구간을 횡단하기 위한 추진공(D=500mm)은 설계상 L=119.5m(제1구간 66.3m, 제2구간 53.2m)가 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지장물로 인해 위치를 이동하여 실제 시공물량은 L=104m(제1구간 53m, 제2구간 51m)로 당초 계획보다 L=15.5m를 적게 시공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미조치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3. 조립식 간이 흙막이 관련

본 공사의 “설시설계보고서 8.3.3 조립식 간이 흙막이편”에 따르면 공사여건, 토질 여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굴착고 2.0m이상 4.0m이하 구간에 대하여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을 선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 공사 ○○○처리분구의 하수관로 구간 중 H=2.0m미만의 조립식 간이 흙막이는 현장 여건상 불필요함에도, 굴착고 H=2.0m미만 구간 L=128m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4. 부지임대료 및 운반비 관련

「설계실무 요령(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경비를 반영하여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의 운송비, 상·하차비 등은 경비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모래(10,868m³), 보조기층(10,489m³), 잡석(409m³) 운반비를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00,000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ㄲㄲㄲ ㄲㄲㄲㄲ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 동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과에서는 “ㄲㄲㄲ ㄲㄲㄲㄲ 급수구역 확장사업”를 아래 [표]와 같이 2016. 8. 5. ‘(주)우우우우 ×××’과 계약 하고 2019. 7. 26.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급수구역 확장사업	00	00	상수관로 L=40km	0,000	2016. 8. 5.	2016. 8.11. ~ 2019. 7.26.	(주)♀♀♀ ×××	진도 20%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관련

본 공사의 송·배수관로 공사구간 중 B-LINE 조립식 간이 흙막이 L=50.84m와 B-LINE계열 조립식 간이 흙막이 L=325m를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시 공사여건, 토질여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굴착으로 시공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없이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부지임대료 및 가물막이 관련

「설계실무 요령(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경비를 반영하여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물가자료 등 단가를 비교·검토하여 최저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하천구간 송·배수관로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물막이 톤마대 (677m³) 설치공사에서 톤마대 자재단가는 최저단가인 1매당 8,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1매당 17,000원의 고가의 단가를 과다 적용하여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